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974
----------	-----

제출년월일 : 2010.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개정사유

- 가.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 지원을 위한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함.

2. 주요내용

- 가.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의3 및 제23조제2항)
- 나. 서부여성회관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함(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별표 5)

3.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따라”로 한다.

제3조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4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부여성회관 :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1장에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중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1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 중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 중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2조 다음의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삭제한다.

제5장(제12조의2와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서부여성회관

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4조제4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5에 둔다.

제12조의3(사업)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창업지원사업 :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3. 상담사업 : 여성·아동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
4.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 : 여성자원활동자 모집, 배치, 교육과 수요처 개발 등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5. 생활체육사업 :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

6. 대관사업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사업
7.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앞에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삽입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제5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제4호 중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4조의2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14조의2 다음의 “제6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제7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으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4조제1호·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한 여성의광장과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부여성회관 :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

제18조제3항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해”를 “제5호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 중 “여성문화회관”을 “여성문화회관과 서부여성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에 의한”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8조 규정에 의거”를 “제18조에 따라”로 한다.

제20조 다음의 “제7장 보칙”을 “제8장 보칙”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을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를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로, “제2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예산의 범위 안”을 “예산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23조제1항에 의거”를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로 한다.

제5조제2호 · 제7조제7호 · 제10조제6호 · 제12조제6호 · 제16조제4호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서부여성회관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제18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 시설 사용료	강당	1회(1시간)	20,000(오전) 30,000(오후) 40,000(야간)	가. 토·일·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나. 매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세미나실	1회(4시간)	30,000	
	야외공연장	1회(4시간)	20,000(주간) 30,000(야간)	
2. 부속설비 사용료	피아노	1회	30,000	
	빔프로젝트	1회	15,000	
	종합조명	1시간	20,000	- 매 시간 초과시 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 초과요금만 추가징수
	마이크	기본3개	10,000 (추가 개당 5,000)	
	녹음	1회	10,000	
3. 냉난방 사용료		1시간	20,000	- 매시간 초과시마다 해당기준 요금의 20퍼센트의 초과 요금만 추가징수
4. 수영장	일일입장	성인	3,000	가. 단체라 함은 10명 이상 동일 소속으로 입장하는 자를 말함. 나. 월회원이라 함은 1개월을 입장하는 자를 말함. 다. 강습회원이라 함은 입회하여 주3일 운영하는 1개월 과정을 수강하는 자를 말함.
		청소년	2,000	
		어린이	1,500	
	단체입장	성인	2,600	
		청소년	1,600	
		어린이	1,300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월회원	성인	42,000	
		청소년	32,000	
		어린이	27,000	
	강습회원	성인	50,000	
		청소년	40,000	
		어린이	34,000	
5. 체육 프로그램 수강료		1개월	20,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6. 교육 수강료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1시간이상 3시간 이하)	12,000	- 재료비는 수강생 부담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4시간이상 7시간 이하)	15,000		
	1개월(과목당 1주 수강시간 8시간 이상)	20,000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 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 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인천광역시의 여성 관련 시 설을 설치·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여성발전기 본법」 제33조에 따라 ----- ----- ----- -----</p>
<p>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인천광역시(이하 “시장”이라 한 다)은 여성 관련 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때에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과 교육을 위해 지역별 균형 과 사회적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설치하되, <u>당해</u> 시설의 설 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p>	<p>제3조(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 ----- ----- ----- ----- 해당 ----- ----- ---</p>
<p>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4. (생략)</p>	<p>제4조(여성 관련 시설의 구분) (현행 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부여성회관 : 여성의 능력개 발을 위한 교육·창업 지원, 여성 과 아동의 상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u></p> <p>5.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 (생략)</p> <p>1. (생략)</p> <p>2.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5조(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대상)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그 밖에</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신설></p>	<p>제5조의2(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p>
<p>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u>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남구 여성회관길 16 (주안동 946-1)에 둔다</u></p>	<p>호, 제2호 및 제4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 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p>
<p>제7조(사업) (생략)</p>	<p>제6조(여성복지관의 위치) <u>제4조제1호에 따른</u> -----</p>
<p>1. ~ 6. (생략)</p> <p>7. <u>기타</u> 여성의 복지향상·사회참여 또는 여가선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p> <p>제7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u>그 밖에</u> -----</p> <p>-----</p>

현행	개정안
<p>제8조(강사) ① 시장은 제4조제1호·제2호의 시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교육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 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의 강사와 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여성의광장(이하 “여성의광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앵고개길 141(동춘동 920)에 둔다.</p>	<p>제9조(여성의광장 위치) 제4조제2호에 따른 ----- ----- ----- -----</p>
<p>제10조(사업) (생략)</p> <p>1. ~ 5.</p> <p>6. 기타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0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5.</p> <p>6. 그 밖에 ----- ----- ---</p>
<p>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여성문화회관(이하 “여성문화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647(갈산동 375-1)에 둔다.</p>	<p>제11조(여성문화회관 위치) 제4조제3호에 따른 ----- ----- ----- -----</p>

현행	개정안
<p>제12조(사업) (생략)</p> <p>1. ~ 5. (생략)</p> <p>6. 기타 여성의 문화활동·사회참여 지원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12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5. (현행과 같음)</p> <p>6. 그 밖에 ----- ----- -----</p>
<p><신설></p>	<p>제5장 서부여성회관</p>
<p><신설></p>	<p>제12조의2(서부여성회관 위치) 제4조 제4호에 따른 인천광역시서부여성회관(이하 “서부여성회관”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5에 둔다.</p>
<p><신설></p>	<p>제12조의3(사업) 서부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교육사업 :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문화·직업교육 등 여성사회교육의 운영과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2. 창업지원사업 : 여성창업에 관련된 정보의 제공·상담·알선과 여성창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3. 상담사업 : 여성·아동의 신상 또는 가정문제 등에 대한 상담·지도에 관한 사업</p>

현행	개정안
	<p>4. <u>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사업</u> : 여성자원활동자 모집, 배치, 교육과 수요처 개발 등 여성자원활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p> <p>5. <u>생활체육사업</u> : 수영장 및 체력단련 등 프로그램 운영 사업</p> <p>6. <u>대관사업</u> :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당, 세미나실 등 대관 사업</p> <p>7. <u>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u></p>
제5장 여성인력개발센터	제6장 여성인력개발센터
<p>제13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시설기준) ① <u>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u></p> <p>② (생략)</p> <p>1. ~ 4 (생략)</p> <p>5. 유아놀이방 등 <u>기타</u>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시설</p>	<p>제13조(여성인력개발센터 명칭과 시설기준) ① <u>제4조제5호에 따른</u> -----</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그 밖에</u> -----</p> <p>-----</p>
<p>제14조(사업) (생략)</p> <p>1. ~ 3. (생략)</p> <p>4. 「<u>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u>」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p>	<p>제14조(사업)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u>」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p>

현행	개정안
<p>5. (생략)</p> <p>6. <u>기타</u>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제14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취소 등)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는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 제33조의2와 제33조의3의 규정에 의한다.</p> <p>제6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p>	<p>5. (현행과 같음)</p> <p>6. <u>그 밖에</u>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p> <p>제14조의2(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정과 취소 등) ----- ----- ----- ----- 따른다.</p> <p>제7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p>
<p>제15조(사용허가) ① <u>여성복지관(제4조제1호·제2호와 제3호 규정에 의한 여성의광장과 여성문화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장에서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u></p> <p>② 시장은 <u>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여성복지관의 기능, 사용자의 사용 용도 및 그 밖의 공익상의 효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여성복지관의 설치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u></p>	<p>제15조(사용허가) ① -----(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성의광장, 여성문화회관 및 서부여성회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 ----- ----- ----- -----</p> <p>② ----- 제1항 ----- ----- ----- ----- ----- -----</p>

현행	개정안
<p>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생략)</p> <p>1. ~ 3. (생략)</p> <p>4. <u>기타</u>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p>	<p>제16조(사용허가의 취소)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그 밖에</u> -----</p>
<p>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p> <p>① (생략)</p> <p>1. ~ 3.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4.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제3호와 <u>제4호의 규정</u>에 의해 징수된 사용료 등은 해당 여성 관련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18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p> <p>① (현행과 같음)</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서부여성회관 : 별표 5의 시설 사용료 및 교육수강료 기준표</u></p> <p>5.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제5호의 규정</u>에 따라 -----</p>

현행	개정안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시장은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u>여성문화회관</u> 수영장의 경우는 제외한다.</p> <p>1. ~ 2. (생략)</p> <p>② (생략)</p> <p>1. ~ 2. (생략)</p> <p>3.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 자와 「<u>장애인복지법</u>」에 의한 장애인</p> <p>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p>	<p>제19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 제4호 -----</p> <p>-----</p> <p>-----</p> <p>----- <u>여성문화회관과</u> -----</p> <p><u>서부여성회관</u> -----</p> <p>1. ~ 2.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 2. (현행과 같음)</p> <p>3. -----</p> <p>-- 「<u>장애인복지법</u>」에 따른 -----</p> <p>4. <u>그 밖에</u> -----</p> <p>-----</p>
<p>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 규정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6조제3호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액 반환하며, 시설 사용자 또는 수강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료, 교육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p> <p>1. ~ 3. (생략)</p>	<p>제20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18조에 따라 -----</p> <p>-----</p> <p>-----</p> <p>-----</p> <p>-----</p> <p>-----</p> <p>-----</p> <p>-----</p> <p>1. ~ 3.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제7장 보칙</u></p> <p>제21조(조직 구성) ① 제4조제3호와 <u>제4호</u>의 여성 관련 시설에는 <u>당해</u> 시설별로 시설의 장을 두어야 하고, <u>당해</u>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p> <p>② <u>제1항의</u> 규정에 의한 시설의 장과 직원에 관한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22조(운영위원회) ① 제4조제3호와 <u>제4호</u>에 해당하는 여성 관련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u>당해</u> 시설별로 운영위원회를 둔다.</p> <p>② <u>제1항에</u> 의한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단체 대표가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선임한다.</p> <p>③ ~ ④ (생략)</p> <p>제23조(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8장 보칙</u></p> <p>제21조(조직 구성) ① ----- <u>제5호</u> ----- <u>해당</u> ----- --- <u>해당</u> ----- -----</p> <p>② <u>제1항에</u> 따른 ----- ----- ----- -----</p> <p>제22조(운영위원회) ① ----- <u>제5호</u> ----- ----- <u>해당</u> ----- -----</p> <p>② <u>제1항에</u> 따른 ----- ----- ----- ----- -----</p> <p>③ ~ ④ (현행과 같음)</p> <p>제23조(관리·운영의 위임 및 위탁 등) ① (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② <u>여성복지관과 여성의광장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장의 권한을 해당 기관장에게 위임한다.</u></p>	<p>② <u>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 및 서부여성회관</u> ----- -----</p>
<p>③ 제1항과 <u>제14조의2의 규정</u>에 의하여 여성 관련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 또는 지정 받은 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u>제22조의 규정</u>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③ -----<u>제14조의2의 규정</u>에 따라 ----- ----- ----- ----- <u>제22조에 따른</u> ----- ----- ----- ----- ----- ----- -----</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시장은 <u>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의 규정</u>에 의하여 여성문화회관 및 센터의 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u>예산의 범위</u> 안에서 시설의 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p>제24조(운영비 등의 지원) ① ----- -----<u>제23조제1항의 규정</u>에 따라 ----- ----- -----<u>예산의 범위</u> ----- ----- ----- -----</p>

현행	개정안
<p>② 제1항에 의하여 센터에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임차보증금 등의 설립비와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관리비, 교육훈련경비 등의 운영경비로 한다.</p> <p>③ (생략)</p>	<p>② 제1항에 따라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관리·감독 등) ① 시장은 제14조의2와 제23조제1항에 의거 관리·운영을 위탁 또는 지정한 여성 관련 시설에 대하여 지도점검 및 관리감독 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25조(관리·감독 등) ① ----- -----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 ----- -----</p> <p>② (현행과 같음)</p>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p>□ 여성발전기본법</p> <p>제33조 (여성관련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과 교육을 위한 여성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의 인력개발을 위한 시설(이하 “여성인력개발센터”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p> <p>④ 국가는 제1항의 여성관련 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여성관련 시설과 제3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여성인력개발센터에 대하여 각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